

【특 집】

장학량정권의 對韓人政策*
- ‘만보산 사건’의 遠因을 찾아서 -

송 한 용**

【 차 례 】

1. 머리말
2. 水田獎勵와 韓人 문제
3. 對韓人 억압 정책 실시와 실재
4. 맺음말

국문초록

1931년 7월 초 중국 길림성 장춘현 만보산지역에서 중국농민과 한인 사이에 수로개착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이 갈등에 일본이 개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국내에 과장되게 보도함으로써 화교배척사건이 일어나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遠因을 찾아서 장학량정권의 대한인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수전개발 그리고 중국관헌들의 한인에 대한 억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장학량정권의 수전장려정책은 한인들이 만주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인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은 한인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관헌들의 부패와 폭력적 억압으로 인하여 한인들은 일본영사관에 의탁하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장학량정권의 한인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지방관헌들의 부패 및 지나친 단속이 ‘만보산 사건’의 遠因으로 작용하였다 하겠다.

주제어 : 장학량, 장학량정권, 만보산 사건, 만주, 재만한인

* 이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005-01401)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1931년 7월초 중국 길림성 장춘현 만보산지역에서의 중국인과 한인교포¹⁾ 사이에 일어난 충돌, 이른바 ‘만보산 사건’을 조선일보는 만주지역의 우리 동포가 중국인에게 많이 희생되었다고 호외로 보도하였다. 이에 격앙되어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화교배척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희생자²⁾를 내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 문제는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³⁾ 다만 주요 논

-
- 1) 중국과 일본의 사료에서 ‘韓人’에 대한 지칭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朝鮮人’, ‘韓人’, ‘鮮人’, ‘韓農’, ‘鮮農’, ‘韓僑’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한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박영석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정부의 보고에는 사망자 91명, 중상자 102명이고, 중국측 발표에는 사망자 142명, 중상자 546명이며, 리턴보고서에는 사망자 127명, 부상자 393명으로 되어 있다(박영석 저, 1978, 『만보산 사건 연구』, 亞細亞文化社, 100~101쪽 참조.)
 - 3) 만보산 사건에 관한 국내 사학계의 연구서로서는 박영석의 『萬寶山事件研究：日帝 大陸侵略政策の一環으로서의』(亞細亞文化社, 1978)가 있고, 연구논문으로는 민두기, 「萬寶山事件(1931)과 韓國言論의 對應」(『東洋史學研究』65, 1999); 박영석, 「日帝의 大陸政策과 萬寶山事件」(『建大史學』2, 1972),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을 위요(圍繞)한 중(中)·일(日) 간의 교섭」(『사총』17, 1973), 「萬寶山事件과 朝鮮에서의 中國人排斥이 「日本」에 미친 影響」(『인문과학논총』8, 1975), 「日帝下 在滿韓人에 대한 中國官憲의 迫害實態와 國內反應」(『한국사연구』14, 1976); 손승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 -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歷史學報』202, 2009),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중국근현대사연구』41, 2009), 「萬寶山事件과 중국의 언론」(『역사문화연구』28, 2007), 「지역너머의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1931년) - 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행위 규명을 중심으로」(『人文研究』53, 2007),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東洋史學研究』83, 2003); 이재명, 「남경 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 만보산 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中國史研究』31, 2004) 등이 있고, 국외의 경우 叢成義, 「萬寶山事件之研究」(대만정치연구소 석사논문, 1983; 胡春惠, 「萬寶山事件中的韓僑問題」(韓國學報)11, 1992. 6); 譚譯·王驅, 「萬寶山事件始末」(『社會科學輯刊』, 1981.6); 陳濤, 「論萬寶山事件與南京國民政府的應對策略」(『牡丹江教育學院學報』, 2010년 제57); 孫茂生, 「略論萬寶山事件」(遼寧大學學報, 1990년 제3기); 羅鳳鳴, 「回憶萬寶山事件的審理」(『法學雜誌』, 1985.6); 文電一組, 「旅華韓僑團體關於萬寶山事件」(『檔案與史學』, 1995.1); 張允喬, 「朝鮮人農民의 夢と涙 - 『開墾』의 万宝山事件を中心に」(『近代文學論集』34, 2008); 長田 彰文, 「万宝山事件と國際關係 - 米國外交官などが見た‘事件’の一側面」(『上智史學』52, 2007.11); 綠川 勝子, 「万宝山事件及び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の一考察」(『明治百年』と朝鮮(特集)『朝鮮史研究會論文集』通号 6, 1969.06); 白井 勝美, 「朝鮮人の悲しみ・万宝山事件 - 昭和史の瞬間-11-」(『朝日ジャーナル』7-11, 1965.03); 菊池 一隆, 「万宝山・朝鮮事件の實態と構造 - 日本植民地下、朝鮮民衆による華僑虐殺暴動を巡って」(『人間文化』22, 2007.9)

의는 ‘만보산 사건’ 자체의 原因을 규명하는 것, 조선에서의 배화사건, 각국 언론에서의 대응모습 등 사건 이후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학량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다.⁴⁾ 본 논문에서는 사건이 장학량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에 유의하여 장학량이 심양으로 돌아와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만보산 사건’은 수전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장학량정권시기 수전개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수전과 관련하여 한인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장작립정권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한인의 국적문제, 교육문제, 토지소유 내지 소작문제, 독립운동 관련문제 등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혹은 억압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명에 이르는 규모의 한인들이 한꺼번에 이동하여 수전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이 개입하여 분쟁화하고 있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한인들을 驅逐하면서도 대부분 한인이 경작하는 수전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한인의 집단적 이동이 일어났고, 일본 관헌과 한인이 쉽게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만보산 사건’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국내에 과장되게 보도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 유의하면서 당시 동북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장학량정권의 對韓人政策을 중심으로 ‘만보산 사건’의 遠因⁵⁾을 찾아보고자 한다.

등이 있다.

- 4)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영석, 1989, 「장학량 중국동북군벌정권의 대한인정책 - 길림성 관내의 판법·밀령·훈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6,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측의 제만한인에 대한 억압사례로서 몇 개의 판법과 훈령을 깊이 분석하고 있다. 그 외 중국관헌의 한인에 대한 억압과 관련하여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5 ; 박영석, 1995, 「日本帝國主義下 在滿韓人の 法的 地位에 관한 諸問題 - 1931년 滿州事變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11 ; 손승희, 2004.8, 「滿洲事變前夜 滿洲韓人の 國籍問題와 中國·日本의 대응」, 『중국사연구』31 ; 손춘일, 2001, 「滿洲事變 前後 在滿朝鮮人 問題와 그들의 困境」, 『정신문화연구』24.2 등이 있다.
- 5) 본 논문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을 原因으로, 그 原因이 발생하게 된 정치·사회적 재요소를 遠因으로 간주한다.

2. 水田獎勵와 韓人 문제

‘만보산 사건’은 만보산지역 중국인 지주의 토지를 한인 농민에게 수전경작을 하도록 알선해준 중개인 郝永德이 長農稻田公司의 명의로 길림성 장춘현 제3구의 蕭翰林, 張鴻賓, 孟昭和, 丁會, 盧昭善, 姜元亨, 任富, 王中富, 孟憲文, 孟憲恩, 姜聖義, 劉振國 등 12명의 지주와 이통하 동쪽 황무지와 熟地에 수전경작을 한다는 전제로 소작계약을 맺고, 한인 농민 李升薰, 李造和, 朴魯星, 李錫昶, 徐龍浩, 金東光, 沈亨澤 등 9명에게 轉租하면서 발생하였다.⁶⁾

1931년 3월 長春縣長은 稻田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東省人이 수전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전경작허가를 내주면 많은 한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구장에게 고용한인의 수와 계약내용을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였다.⁷⁾ 이후 구장은 학영덕의 장농도전공사가 고용한 한인 농민은 남자 130명과 여자 58명으로 모두 188명이며, 이들 한인이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계약내용 및 한인들의 인적조사 등을 첨부하여 長春縣 馬仲援 현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마현장은 고용한인이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안분국장에게 그들을 구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⁸⁾

하지만 도전공사와 계약을 맺은 이승훈 등 한인들은 4월 13일 馬家哨口부터 姜家窩堡까지 길이 20여리의 수로를 파기 시작했고, 중국농민의 여러 차례 저지에도 불구하고 5월 하순에 대부분 공사를 끝냈다.⁹⁾ 이에 200여명의 중국 농민들은 5월 27일 長春市政籌備處에 고소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성정부는 즉시 한인들을 구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¹⁰⁾ 중국인 농

6) 王霖, 高淑英 主編, 1990, 遼寧省檔案館, 吉林省檔案館, 中共吉林省委黨史研究室, 『萬寶山事件』, 10~11쪽.

7) 『長春縣長呈送韓人挖溝種稻始末情形節略』, 위의 책, 43쪽.

8) 『長春縣長馬仲援呈報韓人繼續挖溝並已派員動逐情形』, 위의 책, 12~13쪽.

9) 『萬寶山屯韓人強挖民田經過情形』, 위의 책, 5쪽.

10) 『吉林省政府第1273號指令』, 위의 책, 5쪽.

민들이 수로를 메우면서 한인과 충돌이 일어났다.

이때 한인들은 일본 주장추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田代重德 영사는 일본경찰을 만보산에 파견하여 한인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결국 일본경찰의 ‘보호’ 하에 한인들에 의해서 수로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단순한 한인과 중국인의 갈등에 일본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 이 충돌사건이 이른바 ‘만보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7월 2일 밤과 3일 아침 조선일보에 호외로 과장되게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대대적인 排華운동이 일어났다. 일상적 충돌에 불과했던 사건이 만주사변 직전 한·중·일간의 큰 외교적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만보산 사건’은 벼농사와 관련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 벼농사와 관련하여 장학량정권의 한인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자.

만주지역에서의 벼농사가 한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주지역에 대한 청조의 봉금이 해제되기 이전 한인들은 인삼채집이나 수렵을 위해서 越境하였지만, 1860년대 이후에는 삶의 터전을 삼기 위하여 만주로 이동하였다. 1875년에 이르러 압록강 상류의 通化에서 처음 벼재배에 성공한 이후 벼농사는 점차 만주 전역으로 보급되어 갔다.¹¹⁾

벼농사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그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단위당 수확량이 많았고 1918년과 1919년의 미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률이 더욱 높아졌다.¹²⁾ 더구나 옥수수과 대두, 고량, 조 등은 윤작하여야 했지만 벼농사는 윤작할 필요가 없었다.¹³⁾ 때문에 봉천성과 길림성 당국은 그동안 황무지로 취급받고 있던 저습지를 개간함으로써 재정수입을 늘리고 농업발전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중국인 지주나 일본자본가 모두 벼농사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지방 즉 만주지역에 이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

11) 金穎 저, 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15~16쪽.

12) 滿鐵地方部勸業課, 1921, 『滿洲の水田』, 101쪽.

13) 李勳求 저, 1932, 『滿洲와 朝鮮人』,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간행(1979년 서울 성진문화사 영인본), 180쪽.

만한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¹⁴⁾

각 성당국이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였지만 대토지를 불하받은 군벌과 관료들은 토지의 등급을 올릴 때까지도 별로 개간하지 않았다. 때문에 각 성에서는 개간을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1926년 봉천성에서 「催墾單行規程」을 반포하여 주인이 없는 황지는 官府에서 招墾하여 2년 동안 소작료를 내지 않고 개간하도록 하였다. 주인이 있는 황지는 1년 내에 개간을 끝내도록 하였으며, 1년 후에도 개간하지 않았다면 토지를 몰수하여 주인 없는 황지로 간주해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길림성은 1914년 개간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였고, 1929년에는 「吉林省東北各縣招墾章程」과 「修正吉林省沿邊清丈各縣搶墾試辦章程」을 반포하여 개간을 촉구하였다. 흑룡강성은 1914년 「黑龍江省招墾規則」과 「黑龍江省行政公署招墾布告」를 공포하고, 1927년 3월 「黑龍江省各屬招墾章程」을, 이듬해 9월 「黑龍江省腹部各縣民荒搶墾章程」을 반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간을 장려하였다. 1930년에는 「黑龍江省沿邊荒地搶墾章程」에서는 民荒이나 官荒 할 것 없이 모두 搶墾 범위에 포괄시켜 원래 불하받은 자가 기한 내에 개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창간할 수 있게 하고, 3년 내에 개간을 끝내도록 규정하였다.¹⁵⁾

이토록 적극적인 개간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력 자체가 부족하여, 遼寧省에서는 1930년 2월 「移民墾荒大綱」을 반포하여 여러 곳에 난민수용소와 구제소를 설치하여 난민들을 유지하고, 길림성에서는 1927년 3월 「吉林省救濟難民辦法」, 1929년 「黑龍江省安置災民辦法」, 1930년 「黑龍江省核定安插河南省災民辦法」 등을 반포하여¹⁶⁾ 東三省 모두 墾民을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철도부문에서도 간민에게 승차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정도로 노동력 확보는 쉽지 않았고, 더구나 물이 많은 저습지는 중국인들이 개간을 하지 않으려 했다. 개간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국인은

14) 朴永錫 著, 1978, 『萬寶山事件 研究』, 亞細亞文化社, 39쪽.

15) 金穎 著, 앞의 책, 78~80쪽.

16) 金穎 著, 앞의 책, 81쪽.

스스로 벼를 재배하는 방법을 몰랐고, 대부분 이주한인에게 소작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¹⁷⁾

때문에 개간이나 안정적으로 수전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필요하였다. 1929년 1월 길림지역에서는 중국인 청년회가 연합해서 황무지 개간 계획을 세우고 이주한인 1만호를 모집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¹⁸⁾ 또한 1930년 2월 “金川縣 일대는 馬匪賊 및 ‘불령선인’의 횡횡이 심하여 해마다 鮮農의 거주를 위협하고 전출자가 많고 때문에 수전이 황폐화되고 있다... 본년 농사가 시작되기까지 적당한 소작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여비를 대여해서 멀리 安東縣방면에 이르기까지 모집을 도모한다. 따라서 본년 농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히 다수의 한인을 이주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⁹⁾고 한인이 부족하여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수전경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급히 압록강 하류 국경근처까지 한인을 찾아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인으로 수전경작을 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1929년 절강성에서의 흉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1930년 遼寧省과 吉林省에서 이재민에 대한 구휼적 차원에서 벼농사를 잘하는 절강의 벼농사 숙련농민을 招致하였지만, 기온의 차이와 米食습관 및 기타 생활습관의 차이 때문

17) 金穎 저, 앞의 책, 84쪽.

18)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은 모두 중국으로 入籍할 것.
2. 이주민 3호에 농우 1두를 대여할 것.
3. 주택건축비용으로 1칸에 官幣 300幣를 지급할 것.
4. 이주민은 이주하는 해 1년 동안은 식량의 일체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3년 후에 회수할 것.
5. 황무지 개간 후 5년간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6. 개간 6년째 소작의 2분, 7년째 3분, 8년째 4분을 지주에게 납입하고, 9년째 이후는 절반으로 할 것.
7. 이주 가옥이 1만호에 달할 때는 돈화현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하나의 현을 조직하고 龍門縣으로 칭할 것.

(朝鮮總督府警務局 편, 1930,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62~163쪽 참조, 이후 『在滿鮮人と支那官憲』라고 함)

19)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64쪽.

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²⁰⁾ 심지어 1931년 북양군벌 段祺瑞의 길림 珠河水田公司의 경우, 처음에 절강성 수전농민을 이주시켰지만, 실패하자 이주한 인을 모집한 것에서도²¹⁾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들이 만주지역에서 수전 경작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당국에서 수전경작을 장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인이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29년 4월 1일 요녕농광청의 「整頓水田計劃8個條」를 반포하여 수전경작에 대한 수익성과 종자선택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면서 중국인이 직접 경작하기를 권장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1929년 6월 遼寧省實業廳長 劉鶴齡은 各縣 水利局에 “동삼성민은 원래 耨耕作을 업으로 하고, 도작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요령을 알지 못하였다. … 본청이 種稻를 제창하는 유일한 목적은 곧 국민 스스로 이를 경작하는 것에 있다. 만일 관습상 일시적으로 한인고용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완전히 중국의 법률 및 管理韓僑章程辦法에 따라야 한다. 결코 한인을 고용하여 種稻를 함으로써 분규를 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훈령하고 있다.²³⁾ 중국인이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이미 張作霖시기부터 있었던 것이다. 1923년 吉林省清理田贖局은 제14호 훈령으로 “...(중국인)은 수전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잘 몰라서 하천, 호수, 못 등 습지는 아쉽게도 개간하지 못했다. … 대부분 한인에게 경작을 맡기고 자신은 경작하지 않는다… 한인은 고용하여 경작에 보조가 되도록 하라”고 하였다.²⁴⁾ 오래 전부터 벼농사를 통한 한인의 유입을 막고자 했지만, 만주사변 직전까지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림성 정부 수석위원 張作相은 1929년 3월 25일 “...흥작으로 靑田貸, 고리대를 반환하지 못한 한인 소작농이 중국인 지주의

20)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35~139쪽.

21) 金穎 저, 앞의 책, 102쪽.

22) 金穎 저, 앞의 책, 86쪽.

23)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59쪽.

24) 吉林省檔案資料 L121J101-12-0274(金穎 저, 앞의 책, 89쪽, 재인용)

핍박에 못 이겨 러시아 및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농사지식이 풍부하고 농업개량에도 독특한 능력이 있는 이주한인이 갑자기 이전해 가면, 경내의 생산 능력이 감퇴되고 경작지의 황폐화가 초래될 것이므로 벼농사 권장의 차원에서 그들을 구제하라.”²⁵⁾는 내용의 훈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사실상 한인이 없는 벼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29년 7월 17일 길림성 정부는 지령 제6395호로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을 반포하여全省 범위에서 벼농사를 한층 더 권장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상황은 한인들에 대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에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때문에 한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만보산지역으로 대규모의 무리가 이동하여 개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한인들이 불안정한 개인 간의 소작을 넘어 안정적으로 논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데는 稻田公司가 큰 역할을 하였다. 도전공사는 일반 水稻農場과 같이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이주한인에게 토지를 소작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당시의 사회경제 조건하에서 소작경영형식이 고용형식보다 이득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도전공사는 종종 護墾隊를 조직하여 한인 이민의 생산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였다. 도전공사는 자금이 없는 한인 이민이 소작형태로나마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安身處가 되기도 하였다. 어떤 도전공사는 자금이 없는 이주한인에게 여비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고, 한인에게 소작시키기 위해 귀화허가증명서를 소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²⁷⁾

이렇듯 장학량정권이 토지개간과 수전경작을 장려하면서도 토지소유와 매매에는 매우 민감하였다. 한인의 토지 매매에 대해서 많은 훈령을 내고

25) 1929년 5월 9일, 「支那側ノ小作鮮農救護方訓令ニ關スル件」 『滿蒙各地ニ於ケル朝鮮人ノ農業關係雜件(1)』, 日本外務省史料館資料.

26) 吉林省檔案館資料, 吉林省政府 L121-13 0101-20-0627(金穎 저, 앞의 책, 92쪽, 재인용)

27) 金穎 저, 앞의 책, 93~94쪽.

강한 단속을 하였던 것은 장작림정권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장학량정권이 한인의 토지매매와 소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만보산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검토해야 할 점이다.

장학량이 동북지역의 권력을 장악한 직후인 1928년 7월 봉천성장은 “東邊 각 현에 한인이 거주하는 자가 많다. 그중에는 기간이 지났지만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섭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금후 한인의 土地租用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반드시 해당 토지를 반환 시키고 구축 출경토록 하고, 선인들의 행동을 감시 보고하라”²⁸⁾고 東邊道尹公署에게 훈령하였다.

아울러 한인의 증가를 막기 위해 소작계약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稻田耕作移住鮮人雇傭管理辦法」을 제정하여 각 현에 훈령하고,²⁹⁾ 「修正東邊各縣鮮人小作章程」 16개조를 반포하였다. 반드시 경찰의 입회하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의 1부는 경찰이 보유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지주가 한인에게 소작을 주려면 압록강 서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증인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는 등,³⁰⁾ 한층 강화된 법률로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였다. 또한 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잦은 분규가 발생하므로 지주들은

28) 水野明, 2001, ‘鮮人驅逐出境に關する訓令’(民國 17년 7월 14일/ 奉天省長公署 → 東邊道尹公署), 『張作霖·張學良時代排日法令關係資料(四) 張學良時代』, 『愛知學院大學教養部紀要』제 48권 제3호, 292쪽.

29) 1. 농가의 도전경작을 위해서 이주한인 고용에 관해서는 전지의 대차에 관한 여러 계약을 하라.
2. 이주한인을 고용하는 것은 오직 수전경작을 위한 것으로 기타 일체의 영업에 고용할 수 없다.
3. 농가는 가전경작에 종사하는 이주한인을 확실히 신원을 조사하고 고용하기 바란다. 만약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는 농가의 전책임으로 한다.
4. 이주한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고용의 목적, 기간 두 개 사항을 계약한다.
5. 고용한 이주한인의 성명, 연령, 경작을 시작한 연월일 및 도전의 畝數를 누설하지 말고 구장에게 届出한다. 구장으로부터 현공서 및 小利分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6. 고용한 이주한인 질서를 방해하고, 치안을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농가 혹은 구장으로부터 관서에 계출하고 수시로 해고하고 경계 밖으로 떠나도록 한다. 만약 농가에 은닉하는 자는 조사하여 엄중 처벌한다.
7. 이주한인으로 중국에 호적을 가진 자는 중국의 복장을 입도록 한다.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53~254쪽 참조)

30)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54~257쪽.

한인에게 토지를 租賃하지 말고 반드시 고용계약에 의해서 수전을 경작하도록 훈령하였다.³¹⁾

더욱이 1928년 12월 易職을 전후한 시기에 조차기한이나 소작기한이 만료된 자는 국토를 중시하고 분규와 갈등을 없애는 차원에서 강제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관은 처벌하겠다고³²⁾ 강한 어조의 훈령을 내렸다.

길림성에서도 1929년 1월 「歸化鮮人土地賣買取締」라는 훈령을 내려 귀화한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 우선 관할 警團에 보고해야 하고, 관할 警團은 경관을 보내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토지는 확실히 자기가 경작하며 장래 외국인 또는 미입적자에게 팔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이미 토지를 소유한 귀화한인에 대해서도 외국인 혹은 입적하지 않은 한인에게 轉賣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³³⁾ 지시하였다. 1929년 9월 11일 동북변방사령장관 장학량은 요령성 성장 翟文選에게 일본인의 상조계약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남경중앙정부의 훈령에 기초하여 내년부터 관내 한인에 대한 토지의 대여는 절대 금지하라”고 轉令하였다. 역치 이후 두드러진 특징은 남경중앙정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동삼성 각 정부에 전하고 있고, 또한 내셔널리즘의 고조에 편승하여 매우 강한 조치를 내리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이 없이는 수전경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치 직후에는 수전을 회수하라는 훈령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 예컨대 1929년 2월 봉천성장은 각 현장에 “우리 농민 등은 자주 자기의 良田을 선인에게 租賃하여 수전으로 耕種시키고, 즉시 일시의 小利를 탐하여 영구한 禍患을 남긴다... 현재의 남북통일 하에서 전국이 일치하여 排日排貨를 단행하고, 當政府는 남경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금후 각 현 하의 수전

31) 水野明, 앞의 글, ‘鮮人の土地耕作取締に關する訓令’(民國17년 7월 30일 / 奉天省長公署→各縣知事), 292쪽.

32)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57~258쪽.

33)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86쪽.

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그 방법은 2월부터 3개월간을 기한으로, 2월 이전에 이미 한인에게 租與된 수전은 어쩔 수 없지만, 2월 이후에 租與한 수전은 전부 해약하라. 그 손해배상은 각 해당 현에서 부담하고, 봉천 전성 60개현 안의 수전이 있는 현은 37개현이다. 매 현에 대해서 손실배상비로서 당정부에서 奉天洋 500만원을 줄 것이다. 고로 훈령을 받음과 동시에 수전 회수에 노력하라.”³⁴⁾ 라고 지시하였다. 즉 이러한 조치는 남경국민정부의 지령에 의한 것이며, 통일정권하에서의 내셔널리즘 영향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1930년 1월 21일 遼寧省 성장 臧式毅는 각 현에 “이주한인이 경영하는 수전회수에 관해서 종래 누차 訓達한 바이지만, 중국은 목하 은가폭락에 의해서 모두 경제곤란의 위기에 빠졌다... 지금 우리 중국의 수전경영열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한인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단독경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각 현에서는 각각 구체적인 방책을 강구하고, 현재 이주한인의 손에 있는 수전은 전부 회수함과 동시에 본 년도부터는 절대 대여하지 말도록 각 지주에게 엄달하라.”³⁵⁾고 한인이 경영하는 수전에 대하여 水田回收方密令을 내렸다. 또한 길림성 농광청에서는 1930년 5월 지방산업발전에 수전이 매우 중요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중국인이 수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질책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이 한인을 통해 수전 경작을 확대하여 가는데, 이는 지방산업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므로 한인들의 수전을 회수하여 중국인이 직접 경작하도록 장려하라고 훈령을 내렸다.³⁶⁾ 나아가 길림성정부가 濱江縣에 내린 밀령에서는 귀화한 한인이라 하더라도 지권획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⁷⁾

역시 직후인 1929년 2월 국민정부의 土地盜賣嚴禁條例³⁸⁾ 따라 1929년

34)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58~259쪽 ; 이훈구, 앞의 책, 246쪽.

35)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62쪽.

36)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69~270.

37)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20~221쪽.

38) 水野明, 앞의 글, “國民政府の土地盜賣嚴禁條例”(民國18년 2월 / 國民政府→遼寧省政府), 288~289쪽.

3월 遼寧交涉署는 외국인 土地購買拒絕令을 반포하고, 1930년 9월 11일에 동북정무위원회에서는 국토매매금지령을 공포하였으며,³⁹⁾ 1931년 1월에는 일본인과 중국인간의 상조취소통령을 공포하였다.⁴⁰⁾ 불평등조약 해소와 같은 혁명외교를 제창하고 있던 남경국민정부는 국토의 상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남경국민정부의 분위기가 동북지역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는 만주사변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 1931년 5월 길림성 정부는 「管理延邊中韓人民盜賣國土及盜賣耕牛單行章程」을 반포하였다. 여기에서 부동산증명서에 ‘외국인에게 저당할 경우 무효로 된다’고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소유증빙서류를 소지해도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耕牛를 간민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면 매각자를 처벌하고, 耕牛를 무상회수하며, 간민이 중국의 법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엄하게 징벌하거나 퇴출시킨다고 규정하고⁴¹⁾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법률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학량정권의 우려는 한인에 대한 귀화우대를 취소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길림성정부는 1929년 8월 그동안 취해오던 한인에 대한 「入籍優待辦法取消」를 각현에 밀령으로 내리고 있다.⁴²⁾ 즉 한인들이 빈곤하여 입적비를 1명당 吉林大洋 30원을 2원40전으로 경감하였지만, 귀화한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국토를 매입하여 일본인에게 轉賣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다. 즉 이런 전매는 분규를 낳고 국권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대판법」을 취소하고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훈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남경국민정부의 명을 내세우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1929년 2월 28일 遼寧省 성장 翟文選은 “여러 차례 엄훈에도 불구하고 각 현 관청이 잘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39) 水野明, 앞의 글, ‘東北政務委員會の國土盜賣禁止令’(民國19년9월11일), 288~289쪽.

40) 金穎 저, 앞의 책, 129쪽.

41) 金穎 저, 앞의 책, 132쪽.

42)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20쪽.

이주 한인은 경작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중국인 지주를 농락하여 소작권을 계속 갖고 있다”⁴³⁾고 퇴거훈령의 부실한 집행을 실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은 첫째 요인은 중국인들이 수전경작을 한인에게 의지하는 데 있었다. 1929년 11월 길림성정부는 “종래 성정부가 여러 차례 판법을 만들어 한인의 성내 이주를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이는 지방 중국인 가운데 수전사업의 유리함에 착목하여 몰래 한인을 고용하고, 혹은 토지를 대여경작시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인의 來住를 방지하려면 위와 같은 중국인에 대한 단속을 선결문제로 해야 한다.”⁴⁴⁾고 보고, 중동철도를 둘러싼 중·소 분쟁이 끝나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단속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인 농민은 수전 외에 다른 생활방도가 없었으므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중국인 명의로 土地借入契約를 맺어 수전경작을 함으로써⁴⁵⁾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또 다른 요인은 수전경작에 현실적으로 한인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 6월 通化縣 수리국장 劉蕪은 “일부 배외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밀줄 필자) 일본의 만몽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不逞鮮人’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외교문제 때문에 한인에 대한 구축을 주장한다. 각 향촌 지주 등은 이 선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적지 않은 정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리국에서는 수시로 중국 측 지주와 소작한인 사이를 알선하면서 수전개간을 장려하였다. 특히 농광청장은 수로개착에 관한 포고문을 각 현에 발하면서, 수로개착 때 지방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분쟁사건이 있었지만 수리국장의 알선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⁴⁶⁾ 실제 내려진 조치와는 달리 여전히 수전경작을 위해서는 일부 지방관의 경우 한인이주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수전경작

43) 1929년 3월 1일, 『遼寧省政府/移住鮮人退去命令』 『滿蒙各地ニ於ケル朝鮮人ノ農業關係雜件(1)』,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資料.

44)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68~69쪽.

45) 金穎 저, 앞의 책, 139쪽.

46)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63~264쪽.

을 위한 수로개착의 편의를 도모해주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수로의 개착은 ‘만보산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중국인들의 발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어 분쟁이 적지 않았다. 길림성에서는 1929년 7월 17일 지령 제6395호로 「吉林省政府建設廳管理稻田水利暫行章程」을 제정하여 水渠占地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장정에는 새로 수전을 개간하기 위해 점용되는 수거용지 요청에 대해 租田지주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30년 五常縣 小山子 수전농장에서는 한농 朴義永이 10명의 중국인 지주 중 趙氏 한명의 반대로 水渠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소하였다. 그러자 현장 韓慶雲은 유망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계속 반대하면 처벌하겠다고 훈시를 내려 마침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⁴⁷⁾ 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수전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로개착의 경우 관에서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인만으로는 벼농사가 불가능한데, 만약 한인들이 전체가 되거한다면 경제방면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보산 사건’이 수로개착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 당시 수로개착을 하던 한인들이 중국인들과의 충돌을 전제했다기보다는 중국인의 租田을 가로질러 개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한인을 구축하라는 위로부터의 명령에 대한 위반을 피하면서 한인문제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 즉 한인에 대한 문제는 중국인 지주와 고용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다. 한인들을 개인적인 고용관계에 묶으로써 지주에게 해고당하면 일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즉 관헌이 직접 放逐해야 하는 부담은 줄이고,⁴⁸⁾ 한인들의 수요는 충족시키는 방법이라 하겠다. 심지어 한인 구축이 불가능하자 遼寧省은 고용을 허가해주는 대신 韓僑雇傭錢으로 한인 농민 1명당 지주로부터 現大洋 6원씩 징수하였다.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한인에게 전가되어⁴⁹⁾ 더

47) 金穎 저, 앞의 책, 114~115쪽.

48) 李勳求 저, 앞의 책, 248쪽.

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고용전을 징수하였다는 것은 한인 구축훈령 명령에 대한 응색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장학량정권은 수전을 장려하면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한인의 수전 경작을 위한 토지소유와 소작계약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만주지역에서 한인이 없이는 사실상 수전경작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오히려 일부 지방관헌은 위로부터 오는 훈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조화는 비록 한인에 장학량정권이 한인에 대해서 수전 경작을 제한하고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인들이 여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겠다.

3. 對韓人 억압 정책 실시와 실제

재만한인에 대한 지위 및 권리를 규정한 중·일 양국간의 협정은 1909년의 간도협약, 1915년의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및 교환공문과 1925년의 「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 등이다.⁴⁹⁾ 그 가운데 1925년 6월 11일 奉天全省 경찰국장 于珍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三矢宮松 사이에 체결된 「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소위 三矢協定, 이후 三矢協定이라고 한다.)으로 중국 관헌이 합법적으로 한인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三矢協定을 근거로 봉천군벌은 1927년 한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축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해 12월 전북 이리에서 시작된 배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재만한인에 관계되는 사건은 일본영사관의 관할에 속하였으나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동삼성 당국이 한국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한다는 구실로 재만한인을 고의로 단속의

49) 1931년 3월 13일, 「韓僑雇傭錢徵收ニ關スル件」,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資料, 『滿蒙各地ニ於ケル朝鮮人ノ農業關係雜件(2)』.

50) 朴永錫 역, 1986, 『리턴 보고서』, 탐구당, 121쪽.

대상으로 삼았다. 때문에 재만한인들은 일본영사관경찰과 중국관헌의 단속으로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⁵¹⁾

그렇다면 장학량정권이 등장한 이후 한인에 대한 그동안의 억압정책은 어떻게 변화였는가? 동북정권의 한인에 대한 억압정책은 대체로 토지소유문제, 교육권문제, 귀화문제, 거주권문제, 공산당원문제에 관련된 것 등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얽혀있는 것이지만 별도로 살펴보겠다.

우선 토지소유문제는 한인이 일본의 만주침략의 앞잡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1929년 6월 29일 間島 용정촌 시장에서 한인여자 金五福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중국인 여자 楊某씨의 발을 밟아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다. 다른 한인여자 李明洙가 이를 중재하려 하였지만 부근의 중국인 십수명이 이를 막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한인이 일본경찰관파출소에 급히 알리자, 일본경찰이 출동하여 4명의 중국인을 체포하여 商埠局에 인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일 반감이 노골화하고 이권회수운동으로 발전하였다.⁵²⁾ 물론 아무것도 기낼 곳이 없어 일본경찰에 의지하였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하게 보았을 것은 틀림이 없다.

장학량이 동북의 권력을 장악한 직후인 1928년 8월 권업공사의 토지매수를 방지하라는 훈령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間島에서의 사건을 빌미로 하였다.⁵³⁾ 그 사건은 간도에서 권업공사가 한인으로 하여금 중국인 지주와 교섭하게 하여 32건의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18건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관헌에게 적발되어 중국인 지주 5명과 한인 3명이 구금되었던 것이다. 장학량은 권업공사가 토지매입을 국가적 사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권업공사의 토지매입은 일본이 한인을 이용하여 국토침략주의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라고 하였다.

51) 朴永錫 저, 앞의 책, 49쪽.

52)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5쪽.

53)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85~286쪽.

이러한 시각은 역치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29년 1월 길림성장 작상은 귀화한인의 토지매매의 단속에 관한 훈령을 내렸다. 그 내용에는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 자금출처 등을 정확히 제출하고, 경찰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일본인이나 미귀화 한인에게 轉賣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물론 귀화하지 않은 한인의 토지소유는 각 도시에 일화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⁴⁾ 水田回收와 마찬가지로 역치 이후 내셔널리즘 고양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경국민정부도 국토도매엄금방침의 밀령을 동북정권에 내리고 봉천성정부 등은 1929년 2월 6일 이를 각 관서에 轉令하였다.⁵⁵⁾ 길림성정부는 1929년 5월 3일 국토도매자의 발견에 노력하도록 間島와 奉春 각 현장에게 電訓을 내리고 있다.⁵⁶⁾ 간헐적으로 훈령이나 밀령의 형태로 내려지던 한인의 토지매매에 관해서 1929년 8월 이후에는 좀 더 정비된 법률형태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요령성정부가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懲治盜賣國土暫行條令」⁵⁷⁾와 구체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國土盜賣督辦條例」⁵⁸⁾가 그것이다. 심지어 민간인단체인 요령성외교협회도 國土盜賣懲罰令을 公布해달라는 청원을 하기도 하여⁵⁹⁾ 역치 이후 그리고 중동로 사건이 일어나 이권회수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 한인을 사주하여 침략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은 단순히 토지

54)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86~287쪽.

55)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73~274쪽.

56)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88쪽.

57)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75~277쪽.

58) 李勤求, 앞의 책, 252쪽. 이 조례는 1929년에 만들어진 듯한데, 내용이 알려진 것은 1931년이다. 물론 조례에서 外人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인과 한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규정의 목적은 중국인과 외국인 특히 일본인과 조선인의 부동산매매금지에 있었다.

59)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78쪽.

의 매수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군사력으로 침범할 것이라는 의식으로 확대되었다. 1930년 초 和龍, 安圖縣 지방에서는 일본이 재만한인을 사주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진압을 구실로 출병하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이 널리 퍼져 민심이 동요하였다. 이후 중국인들의 한인에 대한 경계가 극도로 높아졌다.⁶⁰⁾ 특히나 재조선 일본군이 국경부근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자 장개석은 1930년 4월 장학량에게 “중국에서 일어나는 내란을 호기로 (일본군이) 만몽출병을 단행하고자 한다는 첩보가 있다. 따라서 국경의 경계를 엄히 하고 아울러 일본군의 동정을 즉시 보고하라”고 훈령을 내렸다.⁶¹⁾ 이렇듯 일본의 만몽침략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경계의식이 그대로 재만한인에게 투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살펴보자.

재만한인의 자제 교육은 일본교육을 받게 할 수 없고, 중국교육을 받게 할 수도 없어, 순수한 민족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서당과 기타 학교를 설립하여 한인자치의 민족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이국땅에서 한인의 힘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⁶²⁾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인들이 자주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국권옹호차원에서 중국의 교육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장작립시기와 장학량시기 모두 마찬가지이다. 특히 남경국민정부의 경우 장학량에게 “재만한인의 교육기관으로 일본정부와 연계된 보통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만몽정책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신속히 중국의 장래를 위해 이러한 교육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밀령을 내리고 있다.⁶³⁾

이러한 남경국민정부의 방침에 따라 길림성장 장작상은 1929년 2월 16일

60)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40쪽.

61)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42쪽.

62) 朴永錫 저, 앞의 책, 61쪽.

63) 『在滿鮮人と支那官憲』, 38쪽.

한인교육기관을 철폐하라고 각 현에 훈령을 내렸다. 그는 훈령에서 “...(공인된 한인교육기관이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 주권을 파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혁명적 통일이 이미 완성되고, 전국민이... 이권회수에 헌신적 분투를 계속하고 있다. 금일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歸復해야 할 在住한인에게 그 자주적 교육을 공인하는 것은 혁명의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한인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교육기관이라도 일체 이를 철폐하라”⁶⁴⁾고 하였다. 즉 국민혁명과 통일된 분위기 속에 국권수호와 이권회수 차원에서 한인교육기관을 중앙정부의 명에 따라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요령성정부는 1929년 8월 한인들의 교육열 높아 중국학교에 입학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우하고, 가급적 전만주에 있는 한인아동이 삼민주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훈령을 내리고 있다.⁶⁵⁾ 다분히 역치 직후 교육의 중앙화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역치직후에 집중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 전체 한인이 아닌 귀화한 한인에 대해서 중국식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1929년 남경국민정부에서도 한인교육에 대해 조례를 정하면서 “동삼성에서 귀화한 한인(밀출 필자)은 그 수가 적지 않지만 언어를 달리하는 관계상 한인 아동은 중국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한인 스스로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동삼 각성 교육청도 역시 종래 귀화한인 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방임하여왔지만, 이번 국민정부 교육부에서 한인교육에 관해 조례를 만들었으니 遵照하기 바란다”⁶⁶⁾라고 동북 각성에 알렸다. 역시 역치 직후에 모든 한

64) 『在滿鮮人と支那官憲』, 50쪽 ; 水野明, 앞의 글, ‘吉林省の鮮人學校強制閉鎖訓令’ (民國18년 7월 14일/ 吉林省政府教育廳長→各縣教育局長), 264쪽.

65) 『在滿鮮人と支那官憲』, 42쪽.

66) 1. 한인에 대한 교육은 누구나 한문교과서를 사용하고, 조선문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교원으로는 귀화하지 않은 한인 및 일본인을 임용할 수 없다.
2. 국내 각 학교에 입학하는 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인과 같이 대우한다. 타국이(일본을 가리킴) 귀화하는 한인이 다수인 곳에서 학교를 설치할 경우 철저히 이를 제지한다.
3. 귀화한인청년으로 대학에 들어간 경우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식비, 제복, 서

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화한인에 대하여 조례를 반포하고 있는데, 이는 귀화한인을 적극 동화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1930년이나 1931년에는 교육문제에 대해 그다지 훈령이 많지 않은데, 이는 북벌이 완수된 직후 이권회수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1930년부터는 군별간의 반장개석 움직임이 거세지고, 급기야 중원대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국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시작됨으로써 반제국주의 내지 민족주의적 분위기는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0년 길림성정부가 귀화한인의 지권획득을 금지하는 밀령을 내리면서 “한인의 사립학교는 모두 중국관헌의 허가를 거쳐 중국의 과정표준에 맞추도록”⁶⁷⁾ 하였다. 1931년 2월 이주한인 단속에 관한 훈령에서도 “귀화 한인에 대하여는 동화정책을 이행하여 적극적으로 국어, 국문, 교육을 실시하고, 더욱이 역사지식을 받아 민족사상의 보급에 노력하라”⁶⁸⁾고 하였다. 여전히 모두 귀화한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거주문제는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청과 직접 부딪칠 수 있는 문제여서, 그 실행여부는 갈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료들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어서 장학량정권의 관료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인이 만주지역에 이주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의 궁핍 때문이었고 대다수가 농민이었다. 중국에서는 한인의 거주가 일본인이 한반도로 옮기고 한

적 등 모두 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귀화한인으로 대학 혹은 기타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는 교육부에서 적절히 임용하고 혹은 행정원에서 各省區의 관리로 임용할 것.
5. 재학 중인 각 학생은 결코 조선복장을 입을 수 없으며, 한인 자제들이 모여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在滿鮮人と支那官憲』, 42쪽 참조)

67)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20~221쪽.

68) 李勳求 지, 앞의 책, 247쪽.

인들이 이에 밀려서 만주도 이주하는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인의 이주를 막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1925년까지 한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뾰족한 방법이 없던 봉천군벌(장작립시기)은 ‘三矢協定’ 이후 적극적으로 구축작업을 추진하였다.⁶⁹⁾

장학량정권에 들어서 한인의 거주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였는가?

1929년 5월 掏鹿 부근에 이주한 한인 약 300명은 수전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1927년 가을 이래로 중국관민의 태도가 일변하여, 여러 구실로써 논을 회수하려고 획책하였다. 중국인 가옥을 차입하였던 사람은 점차 축출을 당하고, 또 가옥을 건축하려고 하면 대지를 회수하여 그 압박을 견딜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 5월경임에도 불구하고 수전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이주한인은 축출되기도 하였다.⁷⁰⁾ 이렇듯 장학량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

寬甸縣長은 1930년 1월 4일 현내 각공안분국장 앞으로 이주한인에 대한 구축방침을 다음과 같이 밀령을 내렸다. 그 내용을 보면

1. 이주한인에 대해서는 거주 및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종래대로 거주하는 구역 외에는 절대 거주를 허가하지 말 것.
2. 이주한인의 출생, 사망, 혼인, 移居의 사고는 속히 해당 관청에 신고할 것.
3. 이주한인으로 鮮內人和 연락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경 밖으로 방축할 것.

69) 三矢協定 이후 한인박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1927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다. 박영서, 1972, 「일제하의 재만한인 박해문제 - 「재만동포옹호동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15-4, 1976, 「日帝下 在滿韓人에 대한 中國官憲의 迫害實態와 國內反應」 『한국사연구』14 ; 손춘일, 2001, 「滿洲事變 前後 在滿朝鮮人 問題와 그들의 困境」 『정신문화연구』24-2 ; 홍종필, 1994, 「在滿朝鮮人에 대한 中國側의 壓迫에 對하여」 『명지대 인문과학연구논총』12 등이다.

70) 李勳求 지, 앞의 책, 243~245쪽.

4. 이주한인이 그 소작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때는 이를 다시 한인에게 대여하지 말고, 반드시 중국인에게 소작을 하게 할 것.
5. 소작인이 다른 속으로 이사를 위하여 그 소작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때는 이를 한인에게 대여하지 말 것.

이상을 위반한 자가 있을 때는 엄중 처분하고 그 토지를 관에서 몰수 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1929년 개원현에서는 수해 때문에 한인들이 실직하여 결식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속속 이사를 하자, 현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다시는 거주를 허락하지 말라고 縣下 공안국장들에게 명령하기도 하였다.⁷¹⁾

한편 1930년 2월 桓仁縣 二道溝河에서 온 중국관헌 등은 최근 지방 유력자 및 백가장 등과 회합하고, 한인의 이주저지에 관해서, 새로 이주하는 한인을 거주시키는 백가장 및 지주는 벌금 대양 150원에 처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한인은 가급적 귀환시킬 것을 결의하였다.⁷²⁾ 또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주한인들이 ‘不逞鮮人’을 비호하는 관계로 한인을 철저히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⁷³⁾ 거주료를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이주한인들을 放逐하고 있다.⁷⁴⁾ 이상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방관헌이 직접 한인을 구축하는 방법과 지주나 백가장 등 민간에 책임을 넘기는 간접적

71) 水野明, 앞의 글, ‘開原縣政府의 鮮農排斥命令’ (民國18년 8월 9일/ 開原縣長→縣下 各公安局長), 283쪽.

72) 『在滿鮮人と支那官憲』, 302~303쪽.

73) 臨江縣長 董敏舒는 관내 순시도중 2월 9일 동헌 六道溝에 도착 후, 바로 동지 관민 70여 명을 집합시키고, 이주한인의 放逐에 관해서는 ... 개중에서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불량한인’을 비호하는 자가 있어서 宥達이 철저히 않은 것이 유감이다. 한인의 방축은 縣治上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반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在滿鮮人と支那官憲』, 304쪽)

74) 임강현지사는 1월순준 관하 각 공안분국장에 대해서 이주한인 전부를 경외로 방축하라고 밀령을 발했기 때문에 이주한인은 물론 중국인 지주로서도 극도로 공황을 초래하였다. 한인들이 대책을 강구중인 1월 23일 현공안국 巡長 朴桃花는 경사 7명을 이끌고 6·7道溝 이주한인 82호를 방문하고, “너희들은 2월 5일까지 거주료로 매호 봉포 36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외로 방축한다”라고 이를 강경하고, 미납자 3호는 1월 26일 장백현 팔도구 오지로 이전시킴(『在滿鮮人と支那官憲』, 303~304쪽).

인 방법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와 관련한 단속은 관료들의 부패로 실속이 없었다. 부패상황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예컨대 장작림시절인 1927년 1월 6일 臨江縣 二道溝에 중국군경이 와서 同地에 거주하는 한인 60여호에 대하여 同月 20일까지 境外로 퇴거하라고 명령하였다. 한인 백가장 安鳳國씨는 同地 경관 및 保長에게 大洋 700元을 주고 겨우 무사하였다 한다. 또한 1928년 4월 6일 本溪湖縣 第4區保長은 8명을 인솔하고 同地 한인농민 金春京 등에게 당장 퇴거를 명하였다. 한인들은 종래 허가를 얻어 거주하는데, 졸지에 퇴거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保長 등은 이들을 구타 모욕하고, 만일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現大洋 30元씩을 제공하라고 위협하였다.⁷⁵⁾ 이러한 일은 비밀비재하여 중국의 군벌정권시기 “사회는 있어도 국가는 없다”는 말이 유행할 지경이었다. 사실상 한인들이 이주하여 정주하는 데는 중국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기⁷⁶⁾ 때문이다.

한인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인들의 중국으로의 귀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귀화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인식이 공존하였다. 하나는 일본이 한인을 만몽에 이주케 하여 귀화시키고, 귀화한인을 이용하여 만몽을 소란하게 하여 그 기회를 틈타 침략을 자행하려 한다는 것이다.⁷⁷⁾ 다른 하나는 한인들을 귀화시켜 중국인으로 살게 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정책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인의 귀화를 통해서 일본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길림성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역시 이전인 1928년 9월 길림성에서는 당해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 재주한인의 귀화유예기간으로 하였다. 미귀화자는 성내(잡거지를 제외한)에 거주를 허락하지 말고, 후래자의 입경은 거절하라고 각 현장에게 훈령함으로써⁷⁸⁾ 한인들의 귀화를 기간을 설정하여 촉구하고 있다.

75) 李勳求 저, 244~245쪽.

76) 李勳求 저, 앞의 책, 240쪽.

77) 李勳求 저, 앞의 책, 246쪽.

78)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15쪽.

1929년 1월 즉 역치 직후에도 길림성장은 “(남경정부가) 북경정부 폐멸 후에 재주한인의 歸化出願에 대해서, 지방장관에게 귀화원서 受理의 중지를 명하였는데... 재주한인의 귀화허가는 동삼성 자체의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구태여 남경정부의 의도를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동삼성내에 있는 수십만의 비귀화한인을 배척하는 것은 대외관계상 및 인도적 측면에서, 오히려 이를 중국에 귀화시켜서 일본의 간접적 침략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한다.”⁷⁹⁾고 하였다. 즉 한인들의 귀화문제를 지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인의 귀화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시선을 끈다. 남경정부와는 달리 귀화문제를 지방적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역치 직후 구파세력인 길림성장 장작상이 남경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1929년 4월에도 연길 교섭원 張書翰은 착임 직후 성정부주석의 內命이라고 하면서 汪清, 和龍, 延吉, 琿春 네 개 현에 “방축할 때는 재만한인의 對中감정은 날로 악화할 뿐만 아니라 ... 종래처럼 한인에 대한 학대 냉우는 전연 허락하지 않은 방침(밀줄 필자)이다. 한인의 대일감정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먼저 거주한인에 대해서 귀화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優遇策을 강구하라. 그리고 민심을 收攬하여 일본의 만몽정책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계획이다.”⁸⁰⁾ 라고 한인의 귀화독려 뿐만 아니라 한인을 우대하여 우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대일 적극정책을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돈화현장도 1929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인들에게 귀화를 독려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거시키겠다고 하였다. 물론 귀화하면 우대하되 이후에는 의복, 언어,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인과 동일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⁸¹⁾ 구축보다는 귀화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한인을 일본의 만몽침략의 앞잡이로 인식하던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⁸²⁾

79)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15~216쪽.

80)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63~164쪽.

81)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18쪽.

82) 재봉천일본총영사관에서도 중국관헌이 공산당원의 단속을 위해서 민족파를 보호하고 있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훈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1929년 8월 길림 성장 장작상은 현재 거주한인의 수가 50만에 이르렀고 일본제국주의가 이들을 이용함으로써 한인들에게 귀화를 허가하지 말고 토지소유권도 부여하지 말라고 하였다.⁸³⁾ 이러한 태도변화가 왜 나타났는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남경국민정부의 국토도매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이권회수운동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급기야 귀화독려나 우대하라는 훈령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길림성 정부는 한인에 대한 「朝鮮人入籍優待辦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29년 8월 길림성정부는 “한인 다수가 빈곤한 것에 비추어 1명에 대한 입적비 길림대양 30원을 특별히 2원40전으로 경감하였다. 하지만 부담액의 경감은 오히려 폐해를 낳고, 최근 각지에서 귀화한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국토를 매수하고 이를 일본에 전매하는 자가 있다. 또는 표면상 입적했다고 해도 사실은 일본영사관 또는 일본자본가의 출자에 의해서 국토를 매수하는 자가 적지 않다. 만약 이를 엄중 단속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분규를 낳고 국권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朝鮮人入籍優待辦法」은 즉일로 이를 취소하고, 금후 한인으로서 입적출원자가 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길림대양 30원을 징수한다. 또 중국 국법을 준수하고 일본과 결탁하지 않을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한인에 대해서는 국토도매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것”⁸⁴⁾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인들은 1930년 2월 東三省歸化韓僑同鄉會는 국민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재만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중국국적 취득을 쉽게 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다.⁸⁵⁾

이후 다시 귀화정책은 장려책으로 바뀌었다. 1930년 8월 2일 길림성정부

다고 파악하였다.(日本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http://www.jacar.go.jp>), 日本外務省資料 마이크로필름 『在滿鮮人壓迫事情調査報告書』 E-0119, 在奉天日本總領事館(昭和 6년 9월), 47쪽 참조.)

83)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18~220쪽.

84)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20쪽.

85)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02~203쪽.

주석 장작상은 각 현정부에 귀화에 관한 행정절차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30년 9월에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종래의 귀화제한을 타파하고 귀화를 적극 장려하여 한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본의 중국침략정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훈령하였다.⁸⁶⁾

이렇듯 한인귀화는 장작림시기보다 장학량시기에 더 강요되었고,⁸⁷⁾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에서 집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귀화정책과 귀화인에 대한 불신과 단속으로 인해 귀화독촉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⁸⁸⁾ 장작상이 훈령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인들은 중국관원들의 조치를 불신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신은 한인들이 일본주재관에 의탁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역치 직전인 1929년 12월 길림성에서는 「韓黨査防辦法」 8개조를 공포하였는데, 경찰에게 한당단체의 단속여부에 따라 상벌을 문졌다고 함으로써 철저히 체포하라고 엄명하였다.⁸⁹⁾ 역치 이후에는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역치 직후 동삼성정부위원회에서는 남경국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한인사회의 공산당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의 시각은 “소련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이 한인을 이용하여 만주를 불세비키화하고자 한다.... 한인공산주의자는 설복과 테러의 수단으로 당원을 증가시킨다. 그들의 수는 점차로 증가하여왔다. 러시아는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동삼성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한다.”⁹⁰⁾는 것이었다. 장학량정권의 이러한 시각이 이른바 ‘중동로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

86)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5, 61~62쪽 참조.

87) 박영석의 『만보산 사건연구』34쪽, 장작림시기부터 장학량시기까지 귀화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를 정리하여 놓았다. 이를 참조하면 1922년 9월부터 1930년 5월까지 총 38건인데, 장학량이 집권한 1928년 6월 이후가 22건이다. 장학량 시기에 훨씬 더 귀화를 추구하고 있었을 알 수 있다.

88) 동삼성 전체 한인귀화율은 1929년 8.8%이었지만 1931년에는 5.5%에 불과하였다(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31, 361쪽 참조).

89)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87~188쪽.

90) 李勳求 저, 앞의 책, 253쪽.

이다.

중동로를 둘러싼 중·소분쟁에서의 패배로 소련의 중동로관리권이 원상 회복된 이후 길림성을 중심으로 오히려 한인공산당원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930년 1월에 공포된 「不逞鮮人の嚴防方密令」과 「軍警會查韓匪暫行辦法 12개조」 그리고 「不逞鮮人查防方密令9개조」⁹¹⁾이다. 전자는 全省警務處 및 민정청에 대해서 각지 선인을 엄중 감시하고, 지방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곤란한 국제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소속 각 기관에 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주요한 단속대상이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다. 후자에서도 韓匪를 무기 소지, 폭동, 약탈, 협박을 일삼으며 금전을 강탈하거나 적화선전을 하는 증거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이의 단속을 위하여 한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延吉, 敦化, 和龍, 汪清 네 개현 지역내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소관 경찰과 육군 관병이 합동으로 수사하라고 하였다. 마지막도 앞의 네 개현에 내린 밀령으로 ‘불령선인’의 査放함에 있어서 촌둔장이 책임을 지고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어에 능숙한 한인을 경사로 채용해서 정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단속에 대한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警團緝案懲獎辦法에 의하여 이를 징계한다고 함으로써 한인단속을 독려하고 있다.

장학량정권은 한인문제가 대일교섭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른바 ‘불령선인’이 동삼성 각지에 잠입해서 거주한인 등과 밀접히 연락을 취하고, 불온행동을 결행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발할 경우 일본정부와의 교섭이 복잡해지므로 엄히 단속하고 심지어 중국인 보증인이 없으면 거주한인을 외국으로 추방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단과 관계가 있으면 일본측에 인도하였던 것이다.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눈에 띄는 조치를 장학량이 내리고 있다. 장학량이 1930년 1월 北山城子鎮守使에게 내린 밀령에서 “만주 각지에 산재한 소

91)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88~194쪽.

92)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80쪽 ; 183쪽.

위 ‘불령선인’은 일본의 시정에 불만을 품고 일본에 반항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해서 하등의 위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래 일본이 ‘불령선인’ 단속을 요구해오더라도 군대를 출동해서 이를 단속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적절히 하라.”⁹³⁾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장학량정권이 한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인 세력이 우군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의 훈령은 해당 지방관료들에게 정확한 지침이 되지 못하여 그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매우 독특한 것은 한인 학생에 대한 단속이다. 그동안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만주에서의 한인학생들의 반일운동이 대일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이를 엄히 단속하라는 훈령을 내리고 있는 점이다.⁹⁴⁾ 이렇듯 한인단속에 대한 조치들이 완전히 일관성을 결여하였다. 이러한 점은 지방관헌들이 자의적으로 단속하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공산당과 관련한 억압은 매우 심하였다.

1930년 6월 동북정무위원회에서는 「토지상조권회에 관한 판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인들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지만, 귀화입적증서를 가진 사람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귀화입적을 하려면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불령선인’ 赤化亂黨과 기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명하고 純撲誠實함을 보여”⁹⁵⁾ 공산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량정권은 역시 이후 1929년부터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에 대해서도 공산당과 관련한 억압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93)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81쪽 ; 183쪽 ; 194쪽.

94) 『在滿鮮人と支那官憲』, 185쪽.

95) 『在滿鮮人と支那官憲』, 264~266쪽.

1930년 봄 한인 사이에 공산주의가 성행하였고, 그해 가을 그들이 중국 공산당에 합류하여 吉敦철로의 철교를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재만 한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로 가을에서 초겨울에 걸쳐 일어난 관헌과 군인 및 보위단의 한인에 대한 추방, 살해, 강탈 등이 계속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특히 중국관헌 부패와 군인들의 행패와 관련된 피해가 많다. 지방관리들은 상부로부터 단속을 하라는 훈령이 내려오면 이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사복을 채웠다. 즉 조선민족주의자들을 制裁한다는 구실과 조선공산당원을 추포한다는 구실 하에 지방소관리들은 한인에게서 강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강탈하였다. 심지어 지방관리들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부당하게 압박을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관헌들이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배일공기와 국권회복열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⁹⁶⁾

이처럼 공산당원에 대한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한인을 핍박한 것은 매우 처참하였는데, 추방은 경찰과 하급관리들이 실행하였지만, 살해 및 총살은 병사들이 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자란 이유만으로 한인을 총살하였다.⁹⁷⁾ 중

96) 日本國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http://www.jacar.go.jp>), 日本外務省資料 마이크로필름 『在滿鮮人壓迫事情調査報告書』 E-0119, 在奉天日本總領事館(昭和6년9월), 18쪽.

97)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관헌들에 의한 핍박>

1. 1930년 1월. 여인숙 영업자 이외의 집에 친인척 한 사람이 하루 밤 숙박하였는데 숙박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한인 등에게 대하여 금78원씩의 벌금을 강징함.(傑滿洞공안국)
2. 1930년 1월 20일. 新智社 逢春洞 거주 한인 車秉魯에 대하여 중국식으로 단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안국에 끌려가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하고, 벌금으로 금6원을 강징함. 또 같은 촌 姜秉熙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금7원을 강징함.(南陽坪공안국장)
3. 1930년 3월 12일. 和龍縣 釜洞 中三浦 거주 한인 崔性八의 처 金性女가 보리 두말을 매 각하기 위하여 시장에 가는 것을 방곡령 위반이라고 하여 벌금 8원을 강징함.(和龍縣 第4分局 釜洞 第一駐所長)
4. 1930년 6월 13일. 大拉子月川村 한인 南宗陸에 대하여 공산비 수사를 위하여 온 것 같이 차리고, 미리 가지고온 공산당 선전문을 마치 남종육 집에서 발견한 것처럼 날조하여 남씨 일족을 협박하고 벌금으로 금4원을 강탈함.(大拉宗分駐所)
5. 1930년 10월. 雙金鎮 주민 韓英輝 이하 4명은 관헌의 평소 불법을 상사에 보고하려고 하였다는 죄로 반감을 사서 징역 1개년에 처하였음. 죄명은 삼민주의 위반(雙金鎮緝私隊)

국관헌들은 구축의 수단으로 공산당의 혐의, 三矢協定을 배경으로 한 민족주의단체와 단원의 혐의로 철두철미 압박을 가하였던 것이다.

(1930년 중국지방관헌으로 인한 재간도한인 피해상황)

증별사항	폭행사건회수	강탈금액 원	피해인원		남치 또는 불법체포
			상해	살해	
중국군대	30	1,651	9	786	2,000
지방관헌	35	0	0	0	2,000
보위단	5	263	0	7	130
합계	70	1,915	9	83	4,130

(李勳求 저, 『滿洲와 朝鮮人』, 251쪽 참조)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한인들이 살해당하고 금품을 강탈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은 여러 사례에서처럼 물증보다 심증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되어 관료들의 부패나 경찰이나 군대의 행패 등이 직접 단속대상이 아닌 일반한인들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많은 희생을 낳았고 재만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중국정

6. 1930년 10월 13일. 依蘭 九龍坪 외에 13개소의 百戶長을 초집하여 가을 牛賣買移動稅票 書換의 구실 하에 谷洞으로부터 총계 600원의 불법세를 강징함.

<군인들에 의한 핍박>

- 1930년 5월 1일. 琿春縣 興仁里 義社沙團子 거주 한인 유모방에 지나 육군 3명 및 편의대 1명이 나타나 저녁밥을 강요한 후에 2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2명은 부엌에서 유모 부부를 타살하고 현금 270원을 강탈, 도주함.
- 1930년 9월. 長仁洞 지방 거주 한인은 공산비의 습격을 받은 후 중국병사가 공비도별로 와서 4~5일 내지 일주일 이상 체류하고, 마음대로 징발함으로써 주민 전부가 조선 내지로 귀환함.
- 1930년 9월 5일. 길림성 둔화현 城西門 밖 사형장에서 한인 15명을 공산당원이란 구실 하에 전부 총살하고, 해당 지방 한인농민 모두 구축함.
- 1930년 10월 12일. 轉角樓 지방에서 공산당 사건이 발생함.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百草溝 중국육군이 출동하였고, 공산당이 도주한 후인 고로 해당지방에 거주하는 한인 30여명을 이유 없이 검거하여 공산당일파라고 하여 延吉鎮守便署에 압송함.
- 汪清縣에 거주하는 한인농민이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총살을 당한 후 중국군대의 압박에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자가 19호에 달함(李勳求 저, 앞의 책, 249~256쪽, 참조).

서를 낳았을 것으로 보여진다.⁹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억압은 이주한인들을 일본영사관에 의지하게 하였다. 궁핍을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해온 한인이 군벌정권의 지방관현에게 견디기 힘든 핍박 하에서 하는 수 없이 일본영사관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진정과 탄원을 한 재만한인도 있었던 것이다. 중국관현에 의한 구축 상태란 마지막 길이며 죽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⁹⁹⁾ ‘만보산 사건’ 당시 한인들이 일본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장학량정권의 한인에 대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만보산 사건’이 수전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장학량정권에서는 수전개발을 여전히 장려하지만 한인들의 수전경작을 위한 토지소유나 소작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주지역에서 수전경작은 한인을 제외한 중국인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오히려 일부 지방관현은 위로부터 오는 훈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조화는 비록 한인에 장학량정권이 한인에 대해서 수전경작을 제한하고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인들이 여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공간을 찾아 한인들은 집단으로 이동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갔던 것이다. ‘만보산 사건’에서 보이는 집단 이주와 개간에 종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98) 다만 이러한 일련의 장학량정권의 대한인정책이 국내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배화사건은 단순한 조선일보의 오보 때문이라기보다는 축적된 감정이 오보로 인해 폭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99) 朴永錫 저, 앞의 책, 60쪽.

장학량정권하에서도 한인에 대한 억압정책으로 대체로 토지소유문제, 교육권문제, 귀화문제, 거주권문제, 공산당원문제에 관련된 것 등이 계속되었다. 역치 이후 남경국민정부는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국토를 盜賣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토지매매금지와 수전의 회수를 장학량에게 명하였다. 이는 혁명의교와 내셔널리즘 고양에 따른 이권회수운동에 영향을 받은 바였다. 역시 교육문제도 내셔널리즘 고양과 관련이 있어 역치 이후에 한인들의 자주적 교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지만, 귀화한인에 대한 단속이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역치 이후 장학량정권하에서 한인은 불신의 대상이었지만 한인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은 지방관헌들이 자의적으로 단속하거나 부패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들은 오히려 중국관헌을 불신하게 되었고, 일본주재관을 의탁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전과 달리 장학량정권시기 한인들이 귀화하여 일본 대륙침략정책의 첨병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여 귀화를 저지하는 정책의 기초가 강했지만, 한편 귀화시켜 일본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한인들을 중국의 반일정책 우군으로 삼고자 하는 시각이 공존하였다. 귀화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거주권문제는 장작림시기 관헌이 직접 구축 내지 방축하였다면 장학량정권에서는 지주나 백가장 등 관료가 아닌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위임하거나 관헌이 직접 구축하는 방법이 혼용되었다. 특히 거주권문제에서는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오히려 구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한인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게다가 공산당원에 대하여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나쳐서 직접 단속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을 단속함으로써 한인들의 반중국정서를 자극하였다.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본영사관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만보산 사건’에서 잘 드러났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장학량정권의 한인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지방관헌들의 부패 및 지나친 단속이 ‘만보산 사건’의 遠因으로 작용하였다 하겠다.

참고문헌

- 박영석, 1978, 『萬寶山事件研究：日帝 大陸侵略政策의 一環으로서의』, 亞細亞文化社
- 俞辛焯, 1986, 『滿洲事變期の中日外交史研究』, 東方書店.
- 中國現代史研究會編, 1986, 『中國國民政府史の研究』.
- 李勳求, 1932, 『滿洲와 朝鮮人』,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간행(1979년 서울 성진문화사 영인본).
-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5.
- 金穎, 2003, 「만주사변전 在滿韓人의 수진개발에 대한 중국 동북지방 당국의 시책」 『韓國文化』32.
- 金穎, 2009, 「중국 요년성의 벼농사와 조선인 이민사회, 1875~1931」 『한국학연구』21.
- 민두기, 1999, 「萬寶山事件(1931)과 韓國言論의 對應」 『東洋史學研究』65.
- 박영석, 1972, 「日帝의 大陸政策과 萬寶山事件」 『建大史學』2.
- 박영석, 1975, 「萬寶山事件과 朝鮮에서의 中國人排斥이 「日本」에 미친 影響」 『인문과 학논총』8.
- 박영석, 1989, 「장학량 중국동북정권의 대한인정책 - 길림성 관내의 관법·밀령·훈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6, 국사편찬위원회.
- 박영석, 1972, 「일제하의 재만한인 박해문제 - 「재만동포옹호동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15-4.
- 박영석, 1995, 「日本帝國主義下 在滿韓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諸問題 - 1931년 滿洲事變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11.
- 박영석, 1976, 「日帝下 在滿韓人에 대한 中國官憲의 迫害實態와 國內反應」 『한국사연구』14.
- 손승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 -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歷史學報』202.
- 손승희, 2009,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중국근현대사연구』41.
- 손승희, 2007, 「萬寶山事件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28.
- 손승희, 2007, 「지역너머의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1931년) - 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행위 규명을 중심으로」 『人文研究』53.
- 손승희,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83.
- 손승희, 2004, 「滿洲事變前夜 滿洲韓人의 國籍問題와 中國·日本의 대응」 『중국사연구』31.
- 손춘일, 1997 「在滿韓人의 國籍問題와 土地所有權 關係 - 土地商租權을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17.
- 손춘일, 1998 「滿鮮拓植株式會社의 土地經營形態와 在滿韓人」 『忠南史學』10.

- 손춘일, 2001, 「滿洲事變 前後 在滿朝鮮人 問題와 그들의 困境」 『정신문화연구』24-2.
- 유병호, 2002, 「재만한인의 국적문제에 대한 연구-1900년대초 한·청 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람』18.
- 윤휘탁, 2005, 「侵略과 抵抗의 사이에서」 『한국사학보』19.
- 이재령, 2004, 「남경 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만보산 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31.
- 홍종필, 1994, 「在滿朝鮮人에 대한 中國側의 壓迫에 對하여」 『명지대 인문과학연구논총』12.
- 황민호, 1994, 「1930년 재만한인사회주의자들과 중국공산당의 합동에 관한 연구」 『歷史學報』141.
- 叢成義, 1983, 「萬寶山事件之研究」, 臺灣情致研究所碩士論文.
- 叢成義, 1983, 「九一八前的東北韓人問題與中日糾紛」 『韓國學報』3.
- 叢成義, 2009, 「萬寶山事件後在華韓人的自衛活動」 『中國學論叢』25.
- 胡春惠, 1992, 「萬寶山事件中的韓僑問題」 『韓國學報』11.
- 譚譯·王驅, 1981, 「萬寶山事件始末」 『社會科學輯刊』(1981. 6).
- 陳濤, 2010, 「論萬寶山事件與南京國民政府的應對策略」 『牡丹江教育學院學報』(2010년 제5기).
- 孫茂生, 1990, 「略論萬寶山事件」 『遼寧大學學報』(1990년 제3기).
- 羅鳳鳴, 1985, 「回憶萬寶山事件的審理」 『法學雜誌』(1985. 6).
- 文電一組, 1995, 「旅華韓僑團體關於萬寶山事件」 『檔案與史學』(1995.1).
- 張允香, 2008 「朝鮮人農民의 夢と涙-『開墾』의 万宝山事件を中心に」 『近代文學論集』34.
- 長田彰文, 2007, 「“万宝山事件”と國際關係-米國外交官などが見た“事件”の一側面」 『上智史學』52.
- 綠川勝子, 1969, 「万宝山事件及び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の一考察」(‘明治百年’と朝鮮(特集)『朝鮮史研究會論文集』通号6.
- 白井勝美, 1965, 「朝鮮人の悲しみ・万宝山事件-昭和史の瞬間-11-」 『朝日ジャーナル』7-11.
- 菊池一隆, 2007, 「万宝山・朝鮮事件の實態と構造-日本植民地下, 朝鮮民衆による華僑虐殺暴動を巡って」 『人間文化』22.
- 任秀彬, 2004, 「“滿州”・万宝山事件(一九三一年)と中國, 日本, 韓國文學: 李輝英, 伊藤永之介, 李泰俊, 張赫宙」 『東京大學中國語中國文學研究室紀要』7.
- 佐藤文彦, 1991 「万宝山事件の歴史的意義」(平成二年度文學研究科修士論文要旨), 『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21.

■ Abstract ■

Zhang-xueliang Regime's Policy toward the Korean Residents :
In Search of the longterm Origins of the 'Wanbaoshan Incident'

Song, Han - Yong

In early July, 1931, there appeared a conflict between the Chinese farmers and the Koreans in the region of Wanbaoshan, prefecture of Changchun in Jirin over the excavation of waterway. As the Japanes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incident, and the Chosun Ilbo covered the case with exaggeration, which led to anti-Chinese sentiment in Korea, the event became to be an international issue. This paper traces the origins of the incident and analyzes the Korean policy of the Zhang-Xueliang regime.

This ca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addy fields and the oppression of the Korean residents by the Chinese officials. The Zhang-xueliang regime introduced incentives to encourage the Koreans to develop paddy fields, which, however, caused distrust among the Koreans due to the inconsistent policy. Corruption of the Chinese officials and their oppression upon the Koreans led the Koreans to come to the Japanese consulate for help. In sum, the inconsistent policy of the Zhang-xueliang regime toward the Koreans, corruption of the Chinese officials and their oppression upon the Koreans were longterm origins that led to the 'Wanbaoshan Incident'.

Key words : Zhang-xueliang, Zhang-xueliang regime, Wanbaoshan Incident, Manchuria,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